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길윤옥 의원 외 9인

2. 제안이유

- 공공시설의 수영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임(可妊)여성에게 대하여 생리기간 중 수영장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 저출산 시대 여성의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 등 여성들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를 감액토록 규정(안 제13조제5호)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에 대하여 매월 생리(mense)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 임

○ 주요 개정내용은

-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제13조의 ‘사용료의 감액’ 규정을 개정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 최근 웰빙과 더불어 환경친화적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웰빙인 로하스(LOHAS)문화의 생활패턴으로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모성보호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적절한 사회환경적 배려가, 많은 여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로,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사용료 감면의 혜택으로 생활체육 시설 이용의 활성화와 건강한 스포츠·건강한 여가 문화생활 조성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됨